

束草市住居環境改善地區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995. 2. 21.

산 업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5년 2월 7일 속초시장

나. 회부일자 : 1995년 2월 13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3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95.2.21)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건설과장 김진목)

가. 제안이유

-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속초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중 건축법령의 개정 (법률 제4381호, 대통령령 14271호)에 따라 본 법령에서 인용된 조문을 개정코져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속초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거실의 채광 및 환기, 변소, 지하층의 설치등 본 조례 13개 조문의 건축법령 인용 조문을 내용 변경 없이 개정하는 것임.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 본 조례는 건축법령의 조문을 인용한 조례로써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 조례이며,
- 건축법령이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하는 법령 조문의 개정으로
- 타시군과의 통일된 행정업무가 이루어지도록 강원도의 "주거 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안"에 의해 작성된 것임.

4. 質疑 및 答辯要旨

(답변자 : 건설과장 김진목)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일반건축법과 비교할 때 완화된 주요골자는?	○ 기존의 건축법과 비교해 볼 때 -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기존 60㎡이상을 30㎡이상으로 - 건폐율은 기존 60%이하를 90%이하로 - 대지안의 공지는 기존 1층 : 1m, 2층 : 2m, 3층 : 높이의 1/2을 건축법의 1/2로 완화
○ 속초시의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현황은?	○ 속초시 동명동 64번지 일원(영금정일대)의 속초시 동명주거 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주요사업 시행현황은 - 진입도로 확 · 포장 : 390m - 보도블럭 포설 : 760m - 하수도시설 : 1.139m - 공동주택 건립 : 5층, 2개동 50세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타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지구 여건 발생시 추가지정 여부는?	○ 지정해야 할 필요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청호동지역과 6.8해일시 정책적으로 이주한 지역등에 대하여 이 조례가 적용하는 범위에서 시민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 강구 요청?	○ 본 조례의 목적은 집을 짓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으며,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음.

5. 討論 要旨 : 없 음

6. 修正案 要旨 : 없 음

7. 審査結果 : 原案 可決

8.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9.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첨 부 : 속초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속초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9
----------	-----

제출년월일 : 1995. 2. .

제 출 자 : 속 초 시 장

□. 제 안 이 유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속초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를 건축법령의 개정(법률 제4381호, 대통령령 14271호)에 따라 본 법령에서 인용된 조문을 개정코져 하는것임.

□. 주 요 골 자

속초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거실의 채광 및 환기, 변소, 지하층의 설치등 본 조례 13개 조문의 건축법령 인용 조문을 내용변경없이 개정하는 것임.

□. 첨 부

1. 속초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속초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51조"로 "건축법시행규칙 제15조"를 "건축법시행규칙 제30조"로 한다.

제4조중 "건축법 제20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중 "건축법 제22조의3"을 "건축법 제44조"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 방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제1호중 거실의 외기에 접하는 창에 대한 기준 및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제1호에 정하는 열관류율의 값 및 단열재의 두께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열관류율의 값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4에 정하는 열관류율의 2배 이하
2. 단열재의 두께기준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5에 정하는 두께기준의 3분의2이상(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2분의1이상)

제7조중 "건축법 제25조"를 "건축법 제42조"로 "건축법시행령 제25조"를 "건축법시행규칙 제32조"로 한다.

제8조중 "건축법 제27조제1항"을 "건축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중 "건축법 제30조제1항"을 "건축법 제36조 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중 "건축법 제31조제2항"을 "건축법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중 "건축법 제39조"를 "건축법 제47조"로 한다.

제12조중 "건축법 제39조의2 제2항"을 건축법 제49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중 "건축법 제41조"를 "건축법 제51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1호"로 "건축법시행령 제90조제3호 나목 및 다목"을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호 나목"으로 한다.

제15조중 "건축법 제41조의2"를 "건축법 제50조"로 "건축법시행령 제92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81조제1호"로 "건축법시행령 제92조제2항"을 "건축법시행령 제81조제2호"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주택의 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19조·제25조·제27조·제29조·제35조·제46조·제47조·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제3조(거실의 채광 및 환기) <u>건축법 제18조 제1항</u>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명장치는 거실의 용도에 따라 <u>건축법시행규칙 제15조</u> 에 정하는 조도기준의 각 3분의2이상 되는것을 말한다. 다만,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거실의 채광 및 환기) <u>건축법시행령 제51조</u> ----- ----- <u>건축법시행규칙 제30조</u> ----- ----- ----- ----- ----- -----
제4조(변소) <u>건축법 제20조제1항</u> 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변소) <u>건축법시행령 제47조제1항</u> -- ----- ----- -----
제5조(지하층의 설치) <u>건축법 제22조의3</u> 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지하층의 설치기준 면적은 당해 건축물 지상층 바닥면적의 합계의 20분의1이상(그 면적이 각층 평균 바닥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각층 평균 바닥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제5조(지하층의 설치) <u>건축법 제44조</u> ---- ----- ----- ----- ----- ----- -----
제6조(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 방지) <u>건축법시행령 제24조제2항</u> 및 <u>건축법시행규</u>	제6조(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 방지) <u>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제1호</u>

현행	개정안
칙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 정하는 열관류율의 값 및 단열재의 두께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열관류율의 값 : 건축법시행규칙 별표4에 정하는 열관류율의 2배 이하 2. 단열재의 두께기준 : 건축법시행규칙 별표5에 정하는 두께기준의 3분의2 이상(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2분의1 이상)	중 거실의 외기에 접하는 창에 대한 기준 및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제1호에 정하는 열관류율의 값 및 단열재의 두께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열관류율의 값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4에 정하는 열관류율의 2배 이하 2. 단열재의 두께기준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5에 정하는 두께기준의 3분의2이상(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2분의1 이상)
제7조(건축재료의 품질)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제25조에 정하는 건축재료중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직접 관계되는 건축재료에 한하여 적용	제7조(건축재료의 품질) 건축법 제42조 -- ----- ----- ----- 건축법시행규칙 제32조 --- ----- -----

현 행	개 정 안
한다.	---
제8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u>건축법 제27조제1항</u> 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u>건축법 제33조 제1항</u> ----- ----- ----- -----
제9조(건축선의 지정) <u>건축법 제30조제1항</u> 의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건축선의 지정) <u>건축법 제36조 제1항</u> ----- ----- ----- ---
제10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u>건축법 제31조제2항</u> 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u>건축법 제37조 제2항</u> ----- ----- ----- -----
제11조(건폐율) <u>건축법 제39조</u> 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10분의 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은 10분의9)로 한다.	제11조(건폐율) <u>건축법 제47조</u> ----- ----- ----- ----- -----
제12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u>건축법 제</u>	제12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u>건축법 제49</u> 304 ---

현행	개정안
39조제2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u>건축법 제41조</u>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가. (생략) 나. <u>건축법시행령 제90조제3호나목 및 다목이 정하는 높이</u> 제15조(대지안의 공지) <u>건축법 제41조의2</u>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략) 2.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u>건축법시행령 제92조제2항</u>에 정하는 거리의 각 2분의1 이상으로 한다.	조 제2항 ----- ----- ----- 제14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u>건축법 제51조</u> 및 <u>건축법시행령 제86조의1</u> -----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u>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호 나목</u> ----- 제15조(대지안의 공지) <u>건축법 제50조</u> ----- ----- ----- ----- ----- 1. (현행과 같음) 2. ----- ----- <u>건축법시행령 제81조제2호</u> ----- ----- -----

현행	개정안
제17조(주택의 건설기준) <u>주택건설촉진법</u> <u>시행령 별표4 제2호 다목과 주택건설기</u> <u>준에관한규칙 제3조, 제14조, 제22조 내</u> <u>지 제24조의2, 제27조, 제29조, 제30조 및</u> <u>제38조의</u>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제17조(주택의 건설기준) <u>주택건설기준등에</u> <u>관한규정 제9조 · 제19조 · 제25조 · 제27조</u> <u>· 제29조 · 제35조 · 제46조 · 제47조 · 제52</u> <u>조 및 제53조</u> ----- ----- --.